

공유협업센터 운영규칙

제 정 2022. 09. 20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과 소재) 본 센터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유협업센터라 하며, 아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외부기관과의 협력 업무 상 필요한 경우 교외에 활동근거지를 둘 수 있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칙은 대학·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국내·외 산학연 공유·협업 활동의 활발한 교류 및 발전을 이루기 위해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산업기술혁신원 산하에 설치하는 공유협업센터(이하 ‘센터’ 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·지역산업 연계 국내·외 산학연 공유·협업 네트워크 활성화
2. 공유·협업지수(Sharing&cooperation Index) 성과 확산을 위한 전략 지원 사업 공동 개발 및 개방형 인프라 구축 지원
3. 공유·협업 기반 산학연협력 성장 견인 공동 프로젝트 협력 수행
4. 대학 학사조직 및 행정부서 간 유기적 공유·협업 연계 방안 수립 지원
5. 산학연협력 공유·협업사업 수행성과 창출 및 개선을 위한 산학연공유협력위원회 운영
6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대학교 산학연협력 공유·협업 전담조직으로 두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센터장 1명
2. 사업수행을 위한 직원 약간 명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과 대학의 직제운영 및 인사관리 제 규정에 따른다.

제 3 장 산 학 연 공 유 협 력 위 원 회

제6조(구성) ① 본 대학교의 공유·협업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산학연공유협력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, LINC 3.0 사업단장, 신산업기술혁신원장, 창의산학교육원장, 공유협업센터장, 산학사업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추가로 참여가 필요한 교내인사와 교외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(이하 ‘단장’ 이라 한다)이 되며, 위원과 간사는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공유·협업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공유·협업 수행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
3. 공유·협업 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운영사업 기준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9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정부 출연금, 교비, 산학협력단 수익기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한다.

제10조(예산 및 결산) 센터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준수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<산학기획팀-1183: 2022.09.20.>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